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6일, 황명선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9. 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9. 9.) 상정,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9. 19.) 상정, 축조심사

－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9. 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9.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황명선)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출산 및 육아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이런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은 더욱 열악함.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함.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1. 입법 배경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함)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을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추심 등을 지원하게 하고, 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이하 ‘긴급지원’이라 함)를 두어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③ 채무 불이행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계와 육아를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은 아직 열악한 수준임.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245.3만원으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된 처분가능소득 평균(416.9만원)의 58.8% 수준임¹⁾.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실제 받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72.1%로 높은 수준이고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8.6%로 나타남.²⁾

제정법안인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1497호,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이하 ‘박홍근의원안’이라 함)」과 3건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2200703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이하 ‘김남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00987호,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이하 ‘황명선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707호,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이하 ‘김미애의원안’)]」은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 대신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³⁾임.

각 의원안은 지급 신청사유, 지원기준 및 결정 방법,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주체 등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와

1)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12, 166쪽.

2) 위의 글, 241쪽.

3) 2024년 9월 1일 기준 본문에 언급한 4건의 법률안 외에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3건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2484호,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이하 ‘서영교의원안’), (의안번호 제2203287호,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이하 ‘임미애의원안’), (의안번호 제2203461, ‘김한규의원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관련이 없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먼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주요 사안을 쟁점별로 검토한 다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요건 변경 등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외의 개정사항을 검토함.

<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관련 의원안별 세부사항 비교 >

구분 (의안번호)	용어	신청사유	지원 기준 결정 방법	지급여부 결정주체	지급 주체	비용징수 방법
현행 긴급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지급금액은 고시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행 관리원장	이 행 관 리원장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름
박홍근 의원안 (2201497)	대 지 급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15일 이내 결정	이행 관리원장 (단,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이 행 관 리원장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름 (국세청장 에게 위탁 가능)
김남희 의원안 (2200703)	선 지 급	① 양육비 채무 불이행 ② 채권자가 법률 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행 관리원장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인지 모호)	이 행 관 리원장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름
황명선 의원안 (2200987)	선 지 급	① 양육비 채무 불이행 ②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③ 채권자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행 관리원장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인지 모호)	이 행 관 리원장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름
김미애 의원안 (2201707)	선 지 급	① 양육비 채무 불이행 ②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③ 채권자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대통령령으로 정함 30일 이내 결정	이행 관리원장	이 행 관 리원장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름

2.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 필요성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대신 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거나 징수하는 제도임.

현재 양육비 확보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제출된 양육비 부담조서에 집행권원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⁴⁾, 가정법원이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재산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⁵⁾,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사용자에게 직접지급명령⁶⁾을 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⁷⁾ 및 양육비이행명령⁸⁾ 등을 할

4)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5)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6)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7)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

수 있음.

< 현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 >

관계 법령	제도명	주요 내용
민법	협의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의무화	• 협의 이혼 시 당사자 협의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및 집행력 부여 (강제집행 가능)
가사 소송법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명시	• 가정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가능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급여에서 양육비 공제 및 직접 지급 가능 ※ 미이행 시 소속회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강제집행과 동일한 효력 인정(압류 및 전부명령)
	담보제공 명령제도	•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위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명시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시금지급 명령제도	• 담보 제공명령 미이행 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시금 지급 명령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 미이행 시 30일 범위 내 감치
	이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 이행 명령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4. 9.27.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 감치

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8)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또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법」 제14조9)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하 ‘이행관리원장’이라 함)에게 신청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긴급지원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양육비 채권자¹⁰⁾에게 최대 12개월(9개월 원칙, 3개월 연장 가능)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임.

< 긴급지원 지원 현황 >

구 분		누 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예결 산	예산(백만원)	-	240	240	100	100	300	300	300	1,601	1,601	1,601
	결산(백만원)	-	62	116	92	123	262	282	261	1,590	1,601	985
지원자녀수(명)		3,645	79	93	100	123	265	245	510	778	953	499
통합회수율 (누적, %)		18.13						5.05	9.29	12.72	15.36	18.13

자료: 여성가족부

9) 「양육비이행법」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0)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한다

그런데 법원의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며, 양육비 채무자에게 경제력이 없는 경우 집행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렵고, 긴급지원은 지급 요건이 제한적이고 지원 기간이 짧은 등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 제재조치(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정지 요청 등) 도입(2021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행관리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은 42.8%에 불과하고, 한부모가족 아동빈곤률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47.7%(OECD 평균 31.9%, 2021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¹¹⁾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여 더 큰 복지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11) 허민숙,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8, 16쪽.

< 양육비 이행지원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6월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이행의무 확정건수 ¹⁾ (누적)	2,427 (2,427)	2,831 (5,258)	2,783 (8,041)	3,494 (11,535)	4,538 (16,073)	2,428 (18,501)	2,602 (21,103)	2,273 (23,376)	2,466 (25,842)	1,115 (26,957)
이행건수 (누적)	514 (514)	1,044 (1,588)	1,018 (2,576)	1,146 (3,722)	1,993 (5,715)	965 (6,680)	1,400 (8,080)	1,343 (9,423)	1,641 (11,064)	823 (11,887)
양육비 이행률 (누적기준)	21.2	29.6	32.0	32.3	35.6	36.1	38.3	40.3	42.8	44.1

주 1) 이행관리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된 건수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의지를 감소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즉,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오히려 소득 활동을 포기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적 책임을 유기하고 국가에 의존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두고 있는 긴급지원¹²⁾의 경우 실제 환수율이 2023년 기준 15.4%에 불과한바, 양육비를 대지급(선지급)한 후 환수율이 높지 않을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12) 「양육비이행법」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긴급지원 환수율 >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회수율	-	-	0	1.18	1.09	5.05	9.29	12.72	15.36

주: 2021.6.10. 이후에 지원결정된 사건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환수금 징수가 가능해짐.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긴급지원 제도 대신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도입할 경우 향후 5년 연평균 643억 3,600만원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¹³⁾함.

<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2026~2030 >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추가재정소요	63,333	63,881	64,382	64,836	65,249	321,681	64,3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종합하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의 도입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의 필요성과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

13)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긴급지원과 같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통계청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 건수를 추산한 후 양육비 선지급 금액을 곱하여 총 양육비 선지급 비용을 산출한 후 현재 실시 중인 긴급지원 예산(16억 100만원)을 차감하여 구함.

- 추계식: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412,900가구) ×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비율(88.4%) × 양육비 채권 소유 비율(21.3%) × 양육비 채무 미지급율(29.4%) ×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이하 평균 자녀 수(평균 1.4명) × 자녀 1인당 월 대지급액 20만원 × 12개월
- 산출기준: 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른 가구 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평균 비율(1.76%)을 곱하여 산출
②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비율, 양육비 채권 소유 비율, 양육비 채무 미지급율,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이하 평균 자녀 수는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기준
③ 금액은 현행 긴급지원 사업의 지원단가(자녀 1인당 월 20만원)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적 해이 및 국가재정 부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참고로,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의 요건이 완화되어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예정¹⁴⁾임.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으로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위협에 자녀가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양육비 선지급 도입 시 재정추계는 선지급 신청요건으로 소득기준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임.

14)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치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해당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법률 제20417호, 2024.3.26.개정, 2024.9.27.시행)이 시행예정임.

3.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 형식

2024년 9월 1일 기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원안은 총 7건으로, 박홍근의원안은 제정법률안 형식이고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김한규의원안은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는 형식임.

일반적으로 제정법률안은 규율하려는 입법사항이 기존의 법률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규율하기 곤란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방식임¹⁵⁾.

그런데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¹⁶⁾이라는 「양육비이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점, 박홍근의원안의 총칙에 해당하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이 「양육비이행법」과 유사하다는 점, 박홍근의원안에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을 경우 「양육비이행법」의 긴급지원은 종료하도록 하여 두 제도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98쪽.

16) 「양육비이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박홍근의원안 총칙 규정 >

박홍근의원안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육비이행법」 제1조와 동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양육비이행법」 제2조와 동일
제3조(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양육비이행법」 제3조 제1항 ¹⁷⁾ 과 유사 「양육비이행법」 제4조 제1항 ¹⁸⁾ 과 유사
제4조(양육비의 지급 의무)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양육비이행법」 제3조 제2항과 동일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현행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 제정에는 신중검토 입장임.

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관련 주요 쟁점별 검토

가. 양육비 대지급 또는 선지급 용어 검토

4개 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박홍근의원안은 ‘대지급’이란 용어를,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은 ‘선지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¹⁹⁾.

< 4개 의원안 용어 비교 >

박홍근의원안 (제정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대지급	선지급	선지급	선지급

‘선지급’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먼저 내어 줌”을 의미²⁰⁾하고, ‘대지급’은 “은행이나 정부가 지급 보증을 통하여 특정 업자의 지급 신용을 책임진 뒤, 그 특정 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 보증 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일”을 의미함²¹⁾. 즉, 선지급은 소요자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시기에 초점이 있고 대지급은 채무를 대신해 지급한다는 대위에 초점이 있음.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지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임금채권보

19) 참고로, 서영교의원안은 ‘대지급’이란 용어를, 임미애의원안·김한규의원안은 ‘선지급’이란 용어를 사용함.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웹페이지), 2024.8.20.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515816&searchKeywordTo=3

21) 네이버 국어사전, 2024.8.20.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b8076fcdd824b69a0095f42966e24f5>

장법」상 체불임금지급 후 상환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의료급여법」상 급여비용 대지급제도가 있음.

< 대지급 용어 사용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²²⁾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선지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로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경비 선지급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 등이 있음.

< 선지급 용어 사용례 >

22)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등은 수난구조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0호, 2024. 8.17. 시행 예정)」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4개 의원안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지급과 선지급의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법에서 두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봄.

다만, 선지급의 경우 재난복구비용처럼 제3자변제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주체인 경우로서 지급금액 확정 전에 우선 지급하는 사례²³⁾에도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도를 국가의 아동 보호·양육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함으로서 아동에게 안정적 성장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점, 대책 발표로 선지급이 정책용어로 인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지급’이란 용어가 적절하다는 입장임.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이 지원할 복구비등을 금액확정 전에 미리 지급하는 사례로서 ‘선지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나. 신청사유,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박홍근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²⁴⁾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법」 제7조²⁵⁾에 따른 이행관리원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 등은 제정안 제7조²⁶⁾에 따른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대지급 금액은 「양육비이행법」 제5조²⁷⁾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이하 “양육비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고려

24)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5) 「양육비 이행법」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하 생략)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7호, 2024.9.27.시행예정)」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 3. 26.>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하 생략)

26)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1497호,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제7조(양육비결정위원회)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나 위원의 5분의 1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양육비 이행법」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남희의원안은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지급 신청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황명선의원안과 김미애의원안은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③ 양육비 채권자가 법률지원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지급의 대상, 금액, 지급기간 등 지원기준은 김남희의원안과 동일함.

<신청기준 및 지원기준 등 비교>

구분	신청사유	지원기준 등
현행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지급금액은 고시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박홍근 의원안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대지급 신청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은 양육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함 ※ 대지급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 고려 책정
김남희 의원안	①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② 채권자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선지급의 대상, 금액, 지급 기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 고려 책정
황명선 의원안	①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②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③ 채권자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선지급의 대상, 금액, 지급 기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 고려 책정
김미애 의원안	①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②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③ 채권자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 고려 책정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5조(양육비 대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이하 “양육비 대지급”이라 한다)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절반 이상을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②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양육비 대지급 신청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u>제7조에 따른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u>선지급의 대상,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u>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u>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u> ⑤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u>선지급의 대상,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u>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u>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u> ③ 양육비 선지급의 <u>신청 방법 및 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여성가족부령</u>으로 정한다. *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먼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신청사유 중 채무불이행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박홍근의원안은 양육비 채권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불이행한 경우 대지급(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긴급지원 요건보다 엄격하고, 통상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2년 이상 걸리므로 양육비 대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의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 대상을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양육비 채권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도적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과 같이 양육비 채권자의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김남희의원안은 양육비 채권자의 이행확보 노력 요건이 「양육비이행법」상 법률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리고, 박홍근의원안과 김남희의원안은 대지급(선지급) 대상에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 요건이 없는 반면, 황명선의원안과 김미애의원안은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4개 의원안은 대지급(선지급) 금액을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지급(선지급) 대상에 소득요건의 적용여부 및 지급액 결정시 양육비 가이드라인 고려 여부는 국가 재정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 (2024. 3.)”에서 양육비 선지급 지원대상을 양육비 채권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로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하고, 18세 이하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한편, 박홍근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상 성년²⁸⁾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안 제5조제2항)하여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의 지원기간 제도의 성격과 재정소요 등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에 명시할지, 지원기준처럼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여성가족부는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는 바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으로 소득 기준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8)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다.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관련 심의 및 결정 주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심의 및 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박홍근의원안은 여성가족부에 양육비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안 제7조), 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을 추가하며(안 부칙 제2조), 이행관리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안 제8조)하고 지급(안 제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남희의원안과 황명선의의원안은 현행법 제6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심의·의결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5호)하고, 이행관리원의 업무 중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으로 대체하며(안 제7조제6항제4호), 이행관리원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지급을 결정(김남희의원안 제21조의6제2항, 황명선의의원안 제21조의6제3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김미애의원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5호)하고, 이행관리원의 업무 중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으로 대체하며(안 제7조제6항제4호), 이행관리원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안 제21조의9)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illegible]

현행	박홍근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 으로 구성하 고, 위원장 은 여성가족 부차관이 된 다.	다.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양육비 이행관리원) ⑥ 이행관 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 다.	제7조(양육비 이행관리원) — ⑥ ————— ————— ————— ————— ——.	제7조(양육비 이행관리원) — ⑥ ————— ————— ————— ————— ——.	제7조(양육비 이행관리원) — ⑥ ————— ————— ————— ————— ——.	제7조(양육비이 행관리원) — ⑥ ————— ————— ————— ————— —————.
<신설>	3의2. 「양육 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 법」 제5조 에 따른 양 육비 대지급			
4.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4.(현행과 같 음)	4. 제21조의 6에 따른 양육비 선 지급	4. 제21조의6 에 따른 양 육비 선지 급	4. 양육비 선 지급
<신설>	제8조(양육비 대지급 결정 및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제21조의6(양 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	제21조의6(양 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	제21조의9(양육 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 행관리원의

현행	박홍근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육비 대지급 결정의 요지, 양육비 대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통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양육비 대지급 실시 및 이의신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된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	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장은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 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현행	박홍근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결정·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먼저, 대지급(선지급)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와 관련하여,

박홍근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는 반면, 김남희의원안과 황명선의의원안은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추가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 과정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불명확함. 김미애의원안은 심의위원회가 선지급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고 결정은 이행관리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결정이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

으나 결정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한계도 있음.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은 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어 다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 대지급(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신속하게 확보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급여부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선지급을 포함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이행관리원장이 주체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취소·중지, 이의신청 처리 등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박홍근의원안에 대하여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음,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결정 및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은 이행관리원

장이 대지급(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⁹⁾.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및 김미애의원안은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에 따라 행정적으로 필요한 선지급 신청인이나 대상자(이하 ‘신청인등’이라 함)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 제출요구나 금융정보등의 요청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김남희의원안과 김미애의원안은 이행관리원장을 주체로 하고 있는 반면, 황명선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주체로 하되, 이행관리원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양육비 채무 환수 등을 위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동의 없이 소득·재산 자료나 금융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 긴급지원의 사례와 동일하게 4개 의원안 모두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되,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지급(선지급) 결정 주체나 해당 제도의 운영을 위한 조사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29) 서영교의원안은 다른 의원안들과 달리 여성가족부장관이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지급(선지급) 관련 결정·지급 주체 등 비교>

구 분	대지급(선지급) 결정·지급 주체	양육비 환수 주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등의 주체	대지급(선지급) 신청자등에 대한 조사 등의 주체
현행 긴급지원	이행관리원장	이행관리원장	여성가족부장관	
박홍근 의원안	이행관리원장	이행관리원장	여성가족부장관	
김남희 의원안	이행관리원장	이행관리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이행관리원장
황명선 의원안	이행관리원장	이행관리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김미애 의원안	이행관리원장	이행관리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이행관리원장

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이나 2024. 3. 26. 법이 개정³⁰⁾되어 2024. 9. 27. 독립기관이 됨.

30) < 양육비이행관리원 조항 현행 및 시행예정법률 비교 >

현행법	시행예정법률 (법률 제20417호, 2024. 9.27. 시행 예정)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0. (생략)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김남희의원안이나 김미애의원안은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대지급(선지급)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이행관리원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효율성과 지원 신청자 등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대지급(선지급) 결정, 환수 및 대지급(선지급) 신청자등에 대한 조사 등의 주체를 이행관리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반면, 대지급(선지급)은 국가재정으로 지급되고 지급금 회수 및 징수란 침익적 행정행위를 행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결정 및 운영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규정한 법안³¹⁾도 발의되어 있음.

황명선의원안은 대지급(선지급) 결정 및 회수 주체는 이행관리원장으로

한다. 1. <u>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u> 1의2. <u>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u> 2. <u>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u> 3. <u>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u> 4. <u>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u> 5. <u>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u> 6. <u>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u> 7. <u>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u> 8. <u>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u> ③ <u>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한다. 1. <u>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u> 2. <u>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u> 3. <u>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u> 4. <u>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u> 5. <u>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u> 6. <u>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u> 7. <u>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u> 8. <u>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u> 9. <u>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u> 10. <u>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u> ⑦ <u>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u> ⑧ <u>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	--

31) 서영교의원안

하되, 대지급(선지급) 신청자등에 대한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자료제출요구와 동일하게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함.

종합하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의 결정·지급 주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신청자등에 대한 조사나 소득·재산·금융정보등의 조회 주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소득·재산·금융정보등의 조회 주체는 해당 제도의 취지 및 기본권 침해 정도, 법체계의 정합성, 제도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여성가족부는 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창출에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결정 주체를 현행 긴급지원과 동일하게 이행관리원장으로 하고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및 금융정보 조회 주체도 양육비 선지급 결정 주체인 이행관리원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체계적이라는 입장임.

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대지급(선지급) 구상 방법

4개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을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³²⁾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32) 박홍근의원안과 서영교의원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이 개정(2020.12.29.)되어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란 용어가 강제징수로 변경됨에

박홍근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제6조(양육비 대 지급 금액의 징 수) ① 이행관리 원의 장은 양육 비 대지급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 게 통지하여 징 수한다. ② 양육비 채무 자가 제1항에 따 른 징수금을 납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관리원 의 장은 여성가 족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국세 채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 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 른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제21조의11(양육 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 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2항 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이 있는 경우 이를 양육비 채 무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 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 우에는 그 지급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 지하여 회수하 고, 양육비 채 무자가 이에 따 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 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 에 따라 징수	제21조의12(양육비 선지급금의 회 수) ① 이행관리 원의 장은 제21 조의 6 제 3 항 에 따른 양육비 선 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육비 채무자 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 지급을 한 경우 에는 그 지급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 지하여 회수하 고, 양육비 채무 자가 이에 따르 지 아니하는 경 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 라 징수한다.	제21조의12(양육비 선지급금의 회 수)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 우에는 그 지급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 고, 양육비 채무 자가 이에 따르 지 아니하는 경 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

따라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처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규정함이 타당함.

박홍근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u>장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u> <u>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해당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한다.</u> <u>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u>	<u>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u>	<u>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u>②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또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등에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을 할 수 있다.</u>

4개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회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양육비 회수를 위한 구상의 방법으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는 것임.

양육비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함에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국세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예외

를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민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국세 강제징수절차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입법례는 「양육비이행법」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³³⁾,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³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³⁵⁾를 들 수 있음.

응급의료나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긴급지원은 인간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며 긴급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 취업 후 학자금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장기미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이 상환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대지급(선지급) 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인바,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 부담의 경감 및 제

33) 「양육비이행법」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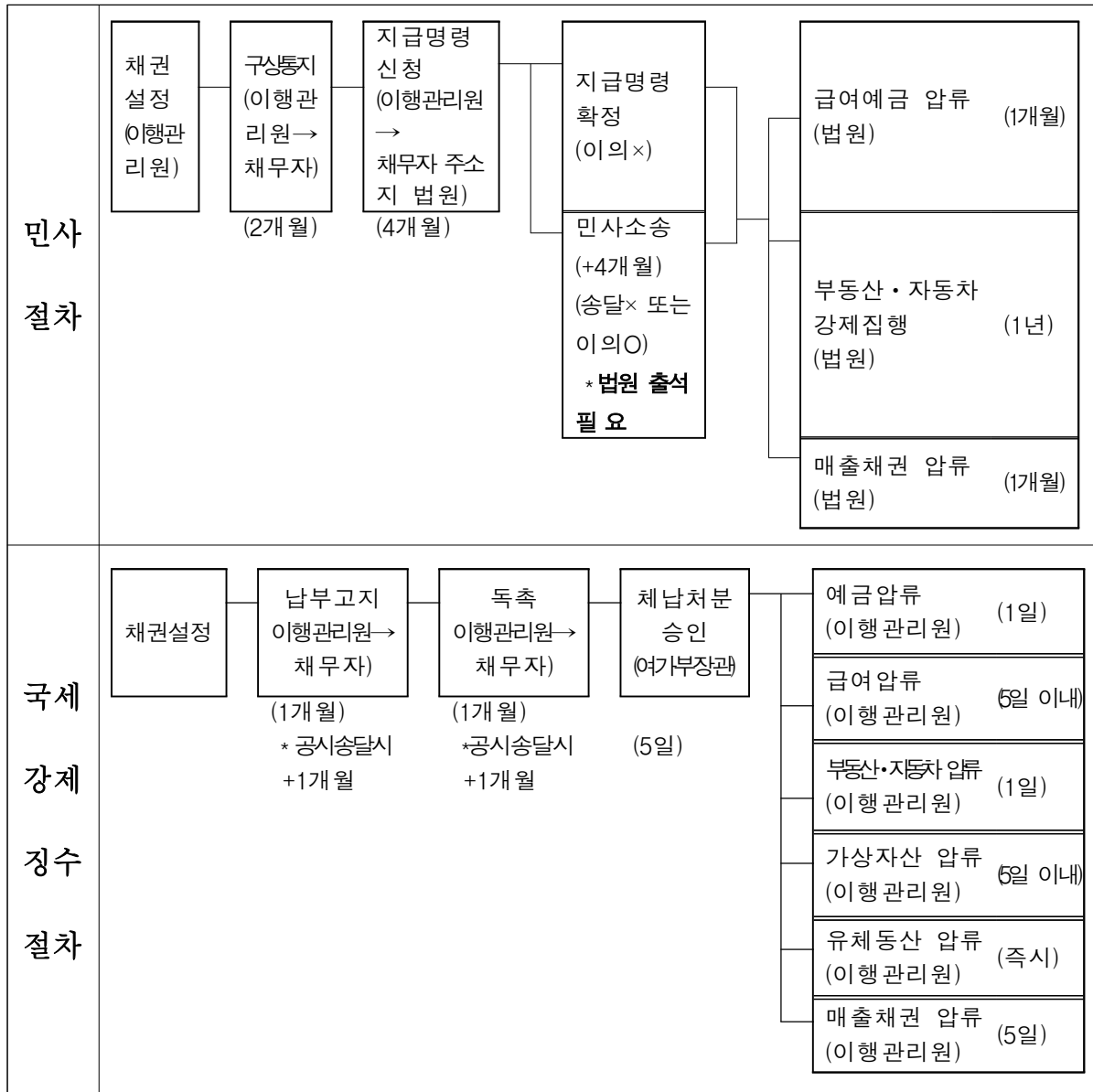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육비의 원활한 회수가 중요하다는 점과

통상 민사절차에 따른 회수는 구상통지부터 강제집행까지 평균 약 7개월~1년이 소요되나 국세 강제징수의 경우 납부고지부터 강제징수까지 평균 3개월~6개월이 소요되므로 양육비 채무자의 자력상실·재산도피 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지급(선지급)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민사절차에 따른 회수와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회수절차 비교 >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단순한 사인간 채권·채무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회수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절차에 의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나 재산도피 전 신속 회수 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긴급지원처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세청은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박홍근의원안에 대하여 현재 국세 체납도 증가하여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세청 위탁은 해당 기관에 자력집행권이 없고 자체 집행기관도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 그 밖의 사항

1) 긴급지원과의 관계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긴급지원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있고(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박홍근의원안은 대지급(선지급)을 받을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제2항)³⁶⁾.

현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	<삭 제>

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
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삭 제>

<삭 제>

<u>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 <u>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삭 제>
--	--------------------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간(9개월 원칙, 3개월 연장가능) 양육비를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³⁷⁾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36)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1497호,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제9조(양육비 대지급 실시 및 이의신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 결정·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37) 이전에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나 2022. 8.16.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로 대상이 확대됨.

< 긴급지원 기준 및 대상 관련 시행령 규정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한다.

1. 삭제 <2022. 8. 16.>

2. 삭제 <2022. 8. 16.>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⑥ (생략)

즉, 현행 긴급지원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한시적이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 위태 여부를 심사해야 함.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고 지급 요건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 위태와 같은 추가적인 심사가 없으며 여성가족부 계획상 지급 금액도 월 20만원으로 동일한 바, 현행 긴급지원의 대상 및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 요건은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긴급지원은 삭제하고 대지급(선지급) 제도로 통일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황명선의원안은 긴급지원을 폐지하면서 부칙에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황명선의원안 부칙 제6조), 종전에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의 권리 보호 및 이미 지원된 금액의 원활한 회수를 위

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³⁸⁾.

황명선의원안
부칙 제6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긴급지원에서 지급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 양육비 선지급제로 개편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사한 두 개의 제도를 동시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긴급지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는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정보등 조회 허용 등

현행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양육자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양육비 지급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자료 및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8) 다만, 양육비 대지급(선지급)과 긴급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은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이 결정되거나 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정보등을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⁹⁾.

현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② ----- ----- ----- ----- ----- ----- ----- ----- ----- ----- ----- ----- ----- ----- ----- --.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② -- ----- ----- ----- ----- ----- ----- ----- ----- ----- ----- ----- ----- ----- ----- --.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②--- ----- ----- ----- ----- ----- ----- ----- ----- ----- ----- ----- ----- ----- ----- ----제21조의9에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
제17조(금융 정보 등의 제공) ①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현 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보등”이라 한다) 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u>따라</u> 한시적 양 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 정보·보험 정보 를 요청할 수 있 다.	-- 제21조의6에 <u>따라</u>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 -양육비 채무자 의 금융정보등을 ----- -.	제21조의6에 <u>따 라</u> 양육비가 선 지급된 경우----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	-----. --제21조의9에-- ----양육비 선지 급이 <u>결정된</u> --- -----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u>따 라</u>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 는 정보통신망으 로 금융정보등을 ----- --.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정보등은 개인의 재산권 및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재판·조사·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⁴⁰⁾하고 있음.

39) 추가로, 3개 의원안 모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1항 신설).

4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 다. (생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금융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은 복지나 보훈 분야의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수익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⁴¹⁾이고, 침익적인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⁴²⁾ 등 매우 제한적임.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 마. (생략)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나. (생략)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나. (생략)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이하 생략)

41)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법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현황
2. 급여 지급 현황
3. 부담금 납입 현황
4.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② (이하 생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이하 생략)

현행법은 긴급지원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나 신용·보험자료를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금융정보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동의율(누적)을 보면, 2023년말 기준 평균 4.1%에 불과하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그 사이 양육비 채무 회피를 위한 재산

42)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특정점포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고 함.

은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산조사 요청건	16,151	1,124	1,511	1,856	2,677	2,044	1,991	1,158	1,725	2,065
본인동의	667	-	98	138	90	89	92	68	31	61
본인동의 비율	4.1	-	6.5	7.4	3.4	4.4	4.6	5.9	1.8	3.0

자료: 여성가족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당액의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바,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국가 재정 부담 경감, 제도의 지속성 등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대지급(선지급)액을 반드시 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긴급지원의 양육비 환수율이 15.4%에 불과한바,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양육비 환수율의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후 양육비를 환수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및 양육비 환수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단순히 사인간 채권·채무로만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 이행 확보 실효성 제고,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기간 단축 및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긴급지원보다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⁴³⁾와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3)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종료, 취소·반환, 중지 등

각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의 취소·변경, 중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3개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의 사유가 변경 또는 상실될 경우 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대지급(선지급) 결정을 취소·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김남희의원안 제21조의6제3항, 황명선의의원안 제21조의6제4항,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10제2항·제3항), 황명선의의원안과 김미애의원안은 취소·변경 또는 중지 사유에 양육비 채권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등을 방해·기피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다음, 4개 의원안은 모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을 중지하도록 함(박홍근의원안 제10조, 김남희의원안 제21조의8, 황명선의의원안 제21조의9,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10제2항). 이에 더해 박홍근의원안은 양육비 채권자가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대지급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4개 의원안 모두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함(박홍근의원안 제11조, 김남희의원안 제21조의10, 황명선의의원안 제21조의11,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11). 다만, 김미애의원안은 선지급 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잘못 지급될 경우에도 지급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11제3항).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가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양육비 대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등 양육비 대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재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용환수)	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양육	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양육	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양육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반환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선지급금의 반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비 선지급금의 반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신청인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	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u>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해당 규정들은 신청 당시 하자가 있거나 지급 이후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 등의 처리 방식으로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을 받아 환수할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양육비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부정수급액에 대해 감경규정을 둔 입법례는 드물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는 김미애의원안처럼 조사 기피 등의 경우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오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이의신청 특례

4개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박홍근의원안 제9조, 김남희의원안 제21조의9, 황명선의의원안 제21조의10,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13).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9조(양육비 대지급 실시 및 이의신청) ③ 제8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36조44)에서는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을 받

- 4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하 생략)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각 의원안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을 현행 긴급지원⁴⁵⁾과 동일하게 30일(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로 두어 「행정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 등을 확인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행정기본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이의신청 특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압류금지 등

4개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금(선지급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함(박홍근 의원안 제12조, 김남희의원안 제21조의6제5항, 황명선의의원안 제21조의6 제6항,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14).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김미애의원안
<u>제12조(권리의 보호)</u> ① 양육비 대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함	<u>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u> ⑤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u>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u> ⑥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u>제21조의14(압류 금지)</u>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45) 「양육비이행법」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의원안	김미애의원안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양육비로 지급받은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는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 담보 제공, 압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된 양육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보장하려는 동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조치로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취지대로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황명선의의원안과 김미애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황명선의원안 제21조의13 및 제24조제11호,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15 및 제24조제9호).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u>제21조의13(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u>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금 및 회수금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출입국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u>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u>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출입국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 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1. 제21조의13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 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 ----- ----- ----- 9.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의 지급 결정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선지급 회수 등 일련의 업무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며, 소득·재산 자료 등 민감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운영주체로 하여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 요구정보(「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및 대상기관(국세청장)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7) 수수료 등 면제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은 양육비에 관한 상담·면접 교섭·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확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자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 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23조(수수료) <u><신 설></u>	제23조(수수료)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제23조(수수료)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	제23조(수수료)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현 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u>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u>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등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8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13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u>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u>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처럼 수수료 면제 규정을 명시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8조⁴⁶⁾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⁴⁷⁾ 등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여 소액 증명서 발급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소송수행 중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은 현행법 제23조제1항⁴⁸⁾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 증명서 발급 비용이 소액(4~500원)이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소송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실질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소액 지출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행정력을 고려할 때 수수료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관계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 등의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금융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⁴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조는 삭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4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48) 「양육비이행법」 제23조(수수료)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8) 벌칙조항

4개 의원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황명선의원안과 김미애의원안은 신청인등의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함.

현행	박홍근의원안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1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 ----- ----- ----- ----- ----- ----- ----.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 및 제21조의8제6항----- ----- ----- ----- ----- ----- ----- ---.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

현행	박홍근 의원안	김남희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u>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u>	<u>년 이하의 징 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에 처한다.</u>	<u>년 이하의 징 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에 처한다.</u>	<u>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u>

각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지원액 반환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하려는 것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기초생활보장 급여⁵⁰⁾ 등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봄.

다만, 박홍근의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개 법안은 구류, 과료까지 벌칙 내용에 추가하고 있는데, 법원이 범죄의 태양이나 죄질에 따라 다양한 형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임.

한편, 신청자등의 금융정보등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는 조항도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와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도 유사하게 금융정보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⁵¹⁾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봄.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벌칙)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인들의 금융정보등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자에게 형사처벌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는 입장임.

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요청 근거 신설

현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13조(비양육부 ·모 또는 양육 비 채무자의 주 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 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 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 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 의 주민등록표 의 열람 및 등 본·초본의 교	제13조(비양육부 ·모 또는 양육 비 채무자의 주 소 등의 자료 요 청 등) ① ----- ----- ----- -----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양육부 ·모 또는 양육 비 채무자의 주 소 등의 자료 요 청 등) ① ----- ----- ----- -----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양육부·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

현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u>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신설>	1. <u>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u>	1. <u>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u>	1.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초본의 교부 요청</u>
<신설>	2. <u>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u>	2. <u>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u>	3. <u>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요청</u>
<신설>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u>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u>	2. <u>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u>

현	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u>의 근무지에 관한</u> <u>정보자료의 제공</u> <u>요청</u>

상대방(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단계인 인지 청구 및 양육비심판청구 시 필수적 제출서류이나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정보자료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에 현재는 비양육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관리원 직원이 법원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개정안은 요청 가능한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채권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법률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김남희의원안과 황명선의원안은 요청자료만 명시하고 김미애의원안은 요청자료뿐만 아니라 요청대상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도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기관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성 증대 및 양육비 이행확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송 중 제출을 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

서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법원행정처는 요청 대상기관이 한정되지 않을 경우 법문언상으로는 관계 기관이 여타의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 확대 등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이행관리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시행예정법률 (법률 제20417호, 2024.9.27.시행예정)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 ----- ----- ----- -----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 ----- ----- ----- ---- 「가사소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 ----- ----- ----- -----

시행예정법률 (법률 제20417호, 2024.9.27.시행예정)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신 설>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 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 항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 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신 설>	7. 제21조의4 에 따른 출국 금지 요청 등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7. 제21조의4 에 따른 출국 금지 요청 등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7. 제21조의4 에 따른 출국 금지 요청 등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8. 제21조의5 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8. 제21조의5 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8. 제21조의5 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먼저, 양육비 불이행 제재조치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⁵²⁾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

52)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치명령은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53))이나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54))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루어짐.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4. 3. 26. 법을 개정하였는바, 2024. 9.27. 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양육비이행법」상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53)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54)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금 지급명령을 추가하여 법 개정으로 제외된 대상을 일부 포함하면서 양육비 미이행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음, 이행관리원에 행정제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이행관리원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요시간 감축 등 지원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제재범위 축소가 우려되므로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행정 제재조치 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이행관리원으로 업무를 위탁하여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부터 제재조치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재조치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명단 공개 소명기간 단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주는 소명기회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김남희의원안, 김미애의원안)하거나,

3개월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단축(황명선의의원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현 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제21조의5(명단 공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 ----- ----- -----10일----- ----- ----- -----.	② ----- ----- ----- ----- -----14일----- ----- ----- -----.	② ----- ----- ----- ----- -----10일----- ----- -----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⁵⁵⁾, 현행법은 명단 공개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행정절차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단축하여 명단 공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나, 조세 체납 또는 임금·대금 체불 시의 명단 공개는 최소 3개월 이상(조세 체납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⁵⁶⁾는 점, 명단 공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양육비 채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 및 이행계획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명

55)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간 단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의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온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완화

김남희의원안과 황명선의원안은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⁵⁷⁾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현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② ----- ----- ----- ----- ----- ----- -----.	제27조(벌칙) ② ----- ----- ----- ----- ----- ----- -----.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 ----- ----- 이행명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 ----- ----- 이행명령을

57)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현행	김남희의원안	황명선의원안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 -----.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 -----.

현행법의 형사처벌 요건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⁵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인데, 개정안은 감치명령보다 앞단계인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4년 3월 법 개정으로 행정제재(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의 요건을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완화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의 요건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경우 양육비 이행을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사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임금채불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는 보기 어렵다

58)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는 점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벌칙 대상을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할 경우 기존 감치명령의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⁵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2024년 3월에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가 선고된 상황으로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처벌 사례 축적 및 그에 따른 효과,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행정 제재조치의 요건 완화가 양육비 이행률 제고에 미치는 성과 등 기존 제도의 추이를 살펴보고 형사처벌 요건에 대한 개정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기간 등을 확인하여 일정한 제재의 필요성이 명백히 확인되어 행하여지는 감치명령 결정과는 달리, 그 전치절차로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 이행을 다시금 촉구하는 단계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행명령 결정을 근거로 하여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9)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김남희의원, 황명선의원, 송옥주의원, 김미애의원, 서영교의원, 임미애의원 및 김한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